

2023년도 제4차 〈제364차 이사회 회의록〉

2023. 8. 10.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23학년도 제4차

<제36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0 인	1 인

1. 일 시 : 2023. 8.10.(목) 07:30 ~ 10:20 (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8월 1일)

2.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2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김영래, 김선용
최기주 (10인)
- 감사 : 윤경식 (1인)

◎ 불참임원

- 이사 : 김성진, 최성민 (2인)
- 감사 : 임종인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교무처장 손정훈, 기획처장 강민철, 예산팀장 장주아
의료원장 박해심, 병원장 한상욱,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기획팀장 박정수(7인)
- 법인사무처: 사무처장 박재호, 기획팀장 김종현, 신창규 (3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 중 열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기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장

- 1 -

이 사

김선용

2023. 8. 10.

7. 심의내용

제 1 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 사립학교법 및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거하여 겸직 허가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박상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영래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 7 조(겸직제한)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삽 입>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u>임원</u>을 겸임(직)하는 경우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3.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대우학원이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 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허가의 필요성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p>제 7 조(겸직제한)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u>교육, 연구,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u>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u>임·직원</u>을 겸임(직)하는 경우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3.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대우학원이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p>5.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p> <p>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3/21/2023

현 행	개 정
<p>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세부사항 및 제1항제4호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u>부 칙</u>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 부품단종, 수리 및 재사용 불가 등 자산가치 상실로 불용 판정된 의료원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처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이 되는 품목은 병원회계 3,359점, 교비회계 905점 등 총 4,264점이며, 취득금액은 총 7,160,450,198원입니다. 이 중 내용연수 10년 이상인 품목은 3,868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3 호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 제1차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이월금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코로나19 회복 및 진료비 단가 상향에 따른 수입예산의 증가 반영, 음압격리병실 조성 및 진료 공간조성 등 기타 정책과 법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예산 887,272백만원 대비 52,168백만원이 증가한 939,440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하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경예산

이 사 김 선용

이 사

21기3

감사 윤경식 : 의료원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1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진료비 단가 일부 상향조정 등으로 의료수익이 본예산 대비 170억원 증가하고 의료비용은 82억원만 증가하여 의료이익이 88억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건비 예산에 2023학년도 임단협 결과가 미반영 되어 있으나, 2023년 7월 31 임금 인상을 3.8%로 합의된 임단협에 따른 임금인상 금액은 133억원이며, 식단가 추가 지원금액은 총 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의료이익은 196억원 수준으로 의료이익률은 2.5%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의료원에 따르면 관련 인건비 인상분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임단협이 조기에 합의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인 의료수익 증대와 지출 예산의 합리적인 통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이익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사장 : 이 외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영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박상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료수입	787,000	770,000
	의료외수입	39,849	38,055
	차입금	11,495	15,000
	기타수입	25,170	5,170
	전기이월자금	75,926	59,047
	계	939,440	887,272
지 출	의료지출	686,274	678,074
	의료외지출	35,588	34,225
	고정자산지출	49,220	25,601
	차입금상환	14,077	14,431
	전출금	59,641	61,374
	기타지출	16,130	16,130
	차기이월자금	78,510	57,437
	계	939,440	887,272

제 4 호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

이사장 :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 발의.

교무처장 손정훈 : 본교 신규임용 대상자는 특별임용교원 1명입니다. 이분은 아주대학교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산학협력단장, 연구정보처장 등의 주요 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풍

이사

3/17/23

직을 수행하였고, 2022년도부터는 아주브레인추진사업단장을 수행하면서 본 대학교의 연구지원제도 개선 및 대형 국책과제 수주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우교수로 임용하여 본 대학교의 연구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2명이며, 이 중 소프트웨어학과 연구중점 조교수 1명은 현 임용기간인 2023년 8월 31일 이내에 연구실적 최저기준 이상의 논문 출판이 되지 않을 경우 재임용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임용 제청드립니다. 특별임용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명, 사이버보안학과 대우교수 1명 등 총 2명으로 동일한 직급으로 재임용을 제청드립니다.

승진임용 대상자는 연구실적을 미충족한 5명을 제외하고 교수 승진 10명, 부교수 승진 2명 등 총 12명을 제청드립니다.

(대상자별 연구실적과 이력 내용 등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 의료원 승진임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은 대상인원 11명 중 1명이 제청되었으며,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은 대상인원 3명 중 1명이 제청되었습니다.

(대상자별 연구실적과 이력 내용 등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영래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내용

가. 신규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재호	대우교수	2023.9.1.~2024.8.31.(1년)
- 이상 본교 1명 -				

나. 재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소연	(연구중점)조교수	2023.9.1.~2026.8.31.(3년)
	다산학부대학	오석규	(교육중점)조교수	2023.9.1.~2026.8.31.(3년)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란	석좌교수	2023.9.1.~2024.8.31.(1년)
	사이버보안학과	홍만표	대우교수	2023.9.1.~2024.8.31.(1년)
- 이상 본교 4명 -				

다. 승진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기계공학과	이정일	교수	2023.9.1.~정년
	화학공학과	김주형	교수	2023.9.1.~정년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선흥

이사 3/17/23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첨단신소재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수학과 금융공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물리학과	조인선	교수	2023.9.1.~정년
	정승호	교수	2023.9.1.~정년
	허용석	교수	2023.9.1.~정년
	홍영대	교수	2023.9.1.~정년
	Teemu H. Laine	교수	2023.9.1.~정년
	박보람	교수	2023.9.1.~정년
	유재인	교수	2023.9.1.~정년
	홍경수	교수	2023.9.1.~정년
	박종호	부교수	2023.9.1.~2029.8.31.(6년)
	이형우	부교수	2023.9.1.~2029.8.31.(6년)
의료원	의학과(영상의학교실)	교수	2023.9.1.~정년
	의학과(응급의학과교실)	부교수	2023.9.1.~2029.8.31.(6년)

- 이상 본교 12명, 의료원 2명 -

제 5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강민철 : 대학의 미래교육 및 혁신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혁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무처의 명칭을 교무혁신처로 변경하고, 산하에 교육 혁신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전공, 모집단위 광역화, 융복합교육 및 학생설계전 공 등 대학 경쟁력의 핵심인 교육 혁신을 심도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육혁신원 산하 지원기관인 다산융복합교육센터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혁신팀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부속기관 대학교육혁신원 및 산하 대학교육혁신원운영팀은 총장직속기구 대학혁신단 및 산하 대학혁신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연구혁신, 산학협력단 혁신 등 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규모가 커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육혁신원 산하 지원기관인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비교과 교육지원센터의 관할부서는 대학교육혁신원에서 교무혁신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미래의 혁신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상시 기구로 미래전략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형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선제적인 전략수립 및 유치활동, 대학의 미래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학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영래 : 교육부는 대학 혁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다른 대학들도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대학 혁신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고 여러 부문에서 혁신이 추진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교무처의 명칭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기구의 이름은 변함이 없지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최기수

만 그 안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획처장 강민철 : 타 대학 사례를 보면 교무혁신처로 이름을 변경한 대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선례가 있고 혁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총장) 최기주 : 제일 큰 아젠다로 교육혁신을 가져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교수님들의 열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융복합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제도 혁신의 중요성을 선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박상일 : 혁신을 위해 반드시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조직 개편의 과정에서 교무처의 혁신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영래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기구) ① 내지 ③ (생략) ④ 대학교본부에는 <u>교무처</u>,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교무처장 : 글로벌미래교육원, <u>대학교육혁신원</u>2. 내지 6. (생략)⑥ (생략)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1. 내지 4. (생략)5. 교무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 <삽입>6. 내지 11. (생략)12. <u>대학교육혁신원</u>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생기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13. 내지 14. (생략)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혁신융합단, SW융합교육원,	<p>제5조(기구)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교본부에는 <u>교무혁신처</u>,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교무혁신처장 : 글로벌미래교육원 <삭제>2. 내지 6. (현행과 같음)⑥ (현행과 같음)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1. 내지 4. (현행과 같음)5. 교무혁신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생기인증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6. 내지 11. (현행과 같음)12. <삭제>13. 내지 14. (현행과 같음)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혁신융합단, SW융합교육원,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흥

이사 최기주

현 행	개 정
<p><u><삽입></u> 인권센터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p> <p>⑨ 내지 ⑩ (생략)</p>	<p><u>대학혁신단</u>, 인권센터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p> <p>⑨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교무처는 교육 관련 행정 및 교원관리<u><삽입></u>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교무팀 및 교원팀<u><삽입></u>을 둔다.</p> <p>②~④ (생략)</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예산의 편성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및 데이터전략팀<u><삽입></u>을 둔다.</p> <p>⑥ 내지 ⑩ (생략)</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교무혁신처는 교육 관련 행정, 교원관리 및 교육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교무팀, 교원팀 및 교육혁신팀을 둔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예산의 편성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데이터전략팀 및 미래전략팀을 둔다.</p> <p>⑥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제10조 (부속기관)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p>1. 내지 3. (생략)</p> <p>4. <u>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u></p> <p>5. 내지 10. (생략)</p> <p>③ 내지 ④ (생략)</p>	<p>제10조 (부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p>1. 내지 3. (현행과 같음)</p> <p>4. <u><삭제></u></p> <p>5. 내지 10. (현행과 같음)</p> <p>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12조 (총장직속기구) ① ~ ⑨ (생략)</p> <p><u><신설></u></p> <p>⑩ ~ ⑯ (생략)</p> <p><u><신설></u></p> <p>⑯ ~ ㉑ (생략)</p> <p><u><신설></u></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 ⑨ (현행과 같음)</p> <p>⑩ 대학혁신단은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한 대학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학혁신팀을 둔다.</p> <p>㉑ ~ ㉕ (현행과 같음)</p> <p>㉖ 대학혁신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㉗ 대학혁신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㉘ ~ ㉚ (현행과 같음)</p> <p>㉛ 대학혁신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p>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3/17/2

현 행	개 정
<u>㉙ ~ ㉚ (생략)</u>	<u>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 <u>㉛ ~ ㉜ (현행과 같음)</u>
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u>교무처장</u> , 연구정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u>교무혁신처장</u> , 연구정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u>부 칙</u> <u>① (시행일)</u>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u>② (경과조치)</u>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무처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교무혁신처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6 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손정훈 : 지난 번 이사회에서 제정된 교원창업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및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교내외에서 창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허가 대상에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본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희택 :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교무처장 손정훈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신희택 : 벤처기업 및 지능정보기업에 대한 겸직은 분명한 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버리면 사실상 교원은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무처장 손정훈 : 최근 교원들이 사회의 다양한 전문분야에 참여하고 계시고, 반대로 외부 인사 분들도 학교 교육 및 연구 분야에 활발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혁신지원사업이나 링크사업에서도 양방향 소통을 통한 산학협력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겸토 과정 중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손정훈

이사 김선흥

이사

31712

이사 신희택 : 학교가 교육이나 각종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겸직허가를 검토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 없이 중소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교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무처장 손정훈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특례에 관한 조문으로 케이스마다 학과별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사 신희택 : 통상 규정이 제정된 후 개별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상선정 여부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인 경우 지급받은 보수의 일정 부분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무처장 손정훈 : 지난번 이사회에서 교원창업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부분과 상치되지 않도록 겸직허가 대상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신희택 : 그렇다면 교육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원창업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교원창업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박상일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업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원창업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제한을 둘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무처장 손정훈 :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은 조금 더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대해 찬성하다.)

제 7 호 보수규정 개정(안)

이사장 : 보수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강민철 : 먼저, 교육실적, 연구실적, 업무실적, 사업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고 재정지원사업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며, 기술이전 수익 재원으로 지급되는 발명자보상금 및 기여자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근무수당에 직원이 기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무직 수당과 우편취급국장 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상협 :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를 보시면 업적급은 교원의 업적 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실적, 연구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는 성과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획처장 강민철 : 업적급은 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성과급은 보수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통

이사

3/21

이사 신상협 : 업적급과 성과급을 정할 때 교육 또는 연구실적이 중복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강민철 : 업적급은 교육 뿐만 아니라 봉사 부문 등 포괄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고, 성과급은 이 중 특별한 성과에 대해 포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상협 : 별도 지급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용어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상 조문을 살펴보면 업적급 평가에 교육실적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교육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실적을 토대로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총장) 최기주 : 네, 검토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 그러면 논란이 없는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내용만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대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제11조(특수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하며, 이 외 나머지는 추가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 보수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1조(특수근무수당)</p> <p>① 직원이 기술 및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정필수요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직원이 기능직에 종사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시설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교원이 출제, 채점 등의 시험 진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직원이 감독 등의 시험 진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11조(특수근무수당)</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직원이 기타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 세부 항목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 제5항은 2023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31기3

제 8 호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강민철 :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2022학년도 결산 미사용이월금의 추가분 반영, 국고사업 등 운영수입 변동에 따른 지출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5억원이 증가한 3,07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철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윤경식 : 1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운영수입 2,804억원에서 전기이월자금 중 운영지출 해당 금액 83억원을 제외한 당기 순 운영지출 2,715억원을 차감하면 운영수지는 89억원입니다. 한편, 자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2023학년도 연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144억원 수준임을 고려해 보면, 지속적인 학교의 운영수지 증대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 장 : 이 외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영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차 추경(안)		증(감)		본예산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수 입	3,079.0	100.0%	165.1	5.7%	2,913.9	100.0%
운 영 수 입	2,804.1	91.1%	66.3	2.4%	2,737.8	93.9%
기 타 자 산 수 입	0.1	0.0%	-	-	0.1	0.0%
기 금 인 출	160.1	5.2%	30.1	23.2%	130.0	4.5%
고 정 부 채 입 금	2.5	0.1%	2.0	400.0%	0.5	0.0%
전 기 이 월	112.2	3.6%	66.6	146.0%	45.6	1.6%
지 출	3,079.0	100.0%	165.1	5.7%	2,913.9	100.0%
운 영 지 출	2,797.4	90.9%	109.4	4.1%	2,688.0	92.2%
자 산 취 득	110.2	3.6%	40.8	58.9%	69.3	2.4%
기 금 적 립	136.3	4.4%	11.6	9.3%	124.7	4.3%
기 타 자 산 지 출	0.0	0.0%	-	-	0.0	0.0%
고 정 부 채	2.0	0.1%	-	-	2.0	0.1%
유 동 부 채	10.2	0.3%	-	-	10.2	0.3%
예 비 비	6.0	0.2%	3.0	100.0%	3.0	0.1%
미 사 용 차 기 이 월	16.9	0.5%	0.2	1.4%	16.6	0.6%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선용

이 사

31.7.2

제 9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23년 8월 31부로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공석 예정인 보직에 대해 그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총장의 제청 등을 받아 공과대학장에 건설시스템공학과 박장호 교수, 경영대학장에 금융공학과 심규철 교수, 인문대학장에 불어불문학과 김용현 교수, IT융합대학원장에 전자공학과 이재진 교수, 학생처장에 e-비즈니스학과 강주영 교수, 병원장에 의학과 박준성 교수, 대외협력실장에 임상현 교수를 2023년 9월 1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합니다. 임명 제청된 보직 교원의 자세한 이력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직명	소속	직급	성명	임기	비고
공과대학장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장호	2023.9.1.~2025.8.31	연임
경영대학장	금융공학과	교수	심규철	2023.9.1.~2025.8.31	신임
인문대학장	불어불문학과	교수	김용현	2023.9.1.~2025.8.31	신임
IT융합대학원장	전자공학과	교수	이재진	2023.9.1.~2025.8.31	신임
학생처장	e-비즈니스학과	교수	강주영	2023.9.1.~2025.8.31	신임
병원장	의학과	교수	박준성	2023.9.1.~2025.8.31	신임
대외협력실장	의학과	교수	임상현	2023.9.1.~2025.8.31	신임

< 간서명란 >

이사장

추도석

이사 김선통

이사

31기수

제 10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김선용 :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무처의 명칭을 교무혁신처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원 선임의 제한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영래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내지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내지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61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조직한다.	제61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혁신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조직한다.
제62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는 교무처장, 의료원은 의	제62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는 교무혁신처장, 의료원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이기우

현 행	개 정
무부총장, 전문대학은 교학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학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의료원은 의과대학장, 전문대학은 산학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은 의무부총장 , 전문대학은 교학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학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의료원은 의과대학장, 전문대학은 산학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9조 (본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	제89조 (본부조직) ① 대학교에 <u>교무혁신처</u> ,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교무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 제62조 및 제89조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정관 시행 전 임명된 교무처장은 이 정관에 따라 교무혁신처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p>

제 11 호 아주대학교 교지 토지교환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지 토지교환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김선용 : 먼저, 토지교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도시계획시설인 아주대학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캠퍼스 내 신축이 어느 정도 완결되었음으로 해당 사업의 완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완료 보고를 위해 아주대 부지 전체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신학원 소유의 구조물이 아주대 교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신학원이 침범한 면적은 총 855m²이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 토지교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지교환 부지 중 원천동 산9-1번지는 대우학원과 유신학원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부상 대지지분과 실제 사용면적을 고려하여 펜스 및 경계석 등을 기준으로 분할하고자 하며, 분할 후 면적은 대우학원 4,736m², 유신학원 619m²가 되겠습니다. 이 중 유신학원이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50m²는 토지교환으로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토지교환 대상면적은 총 855m²이며, 대상 토지가 교육용기본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교지 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동일면적 기준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 기관이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재산처분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공부상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교환차액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우학원은 유신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정문 앞 진·출입 도로부지 152m²를 이전받고, 나머지 면적 703m²는 원천동 1-1번지와 우만동 9-1번지에서 이전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 후 토지는 아주대학교 교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면 심의하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 선 용

이 사

31기3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신회택 : 원(안)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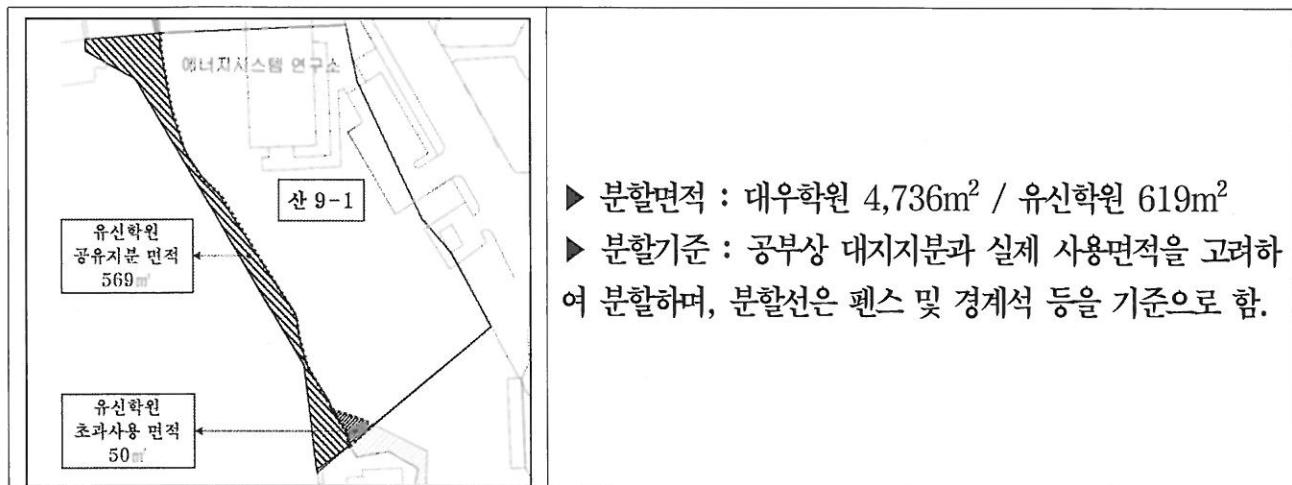
이사김영래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지 토지교환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공유토지 분할 승인 내용



■ 아주대학교 교지 토지교환 승인 내용

(면적: m^2)

대우학원 → 유신학원으로 이전		유신학원 → 대우학원으로 이전	
지번(경기도 수원시)	이전면적	지번(경기도 수원시)	이전면적
① 원천동 1	44	② 원천동 11-30(아주대 정문)	152
② 원천동 산10-2	189	④ 원천동 1-1	122
③ 원천동 산9-1(공유토지)	50	⑤ 우판동 9-1(아주대 뒤편)	581
④ 원천동 산5-1	572		
계	<u>855</u>	계	<u>855</u>

※ 동일면적 기준으로 교환(교환차액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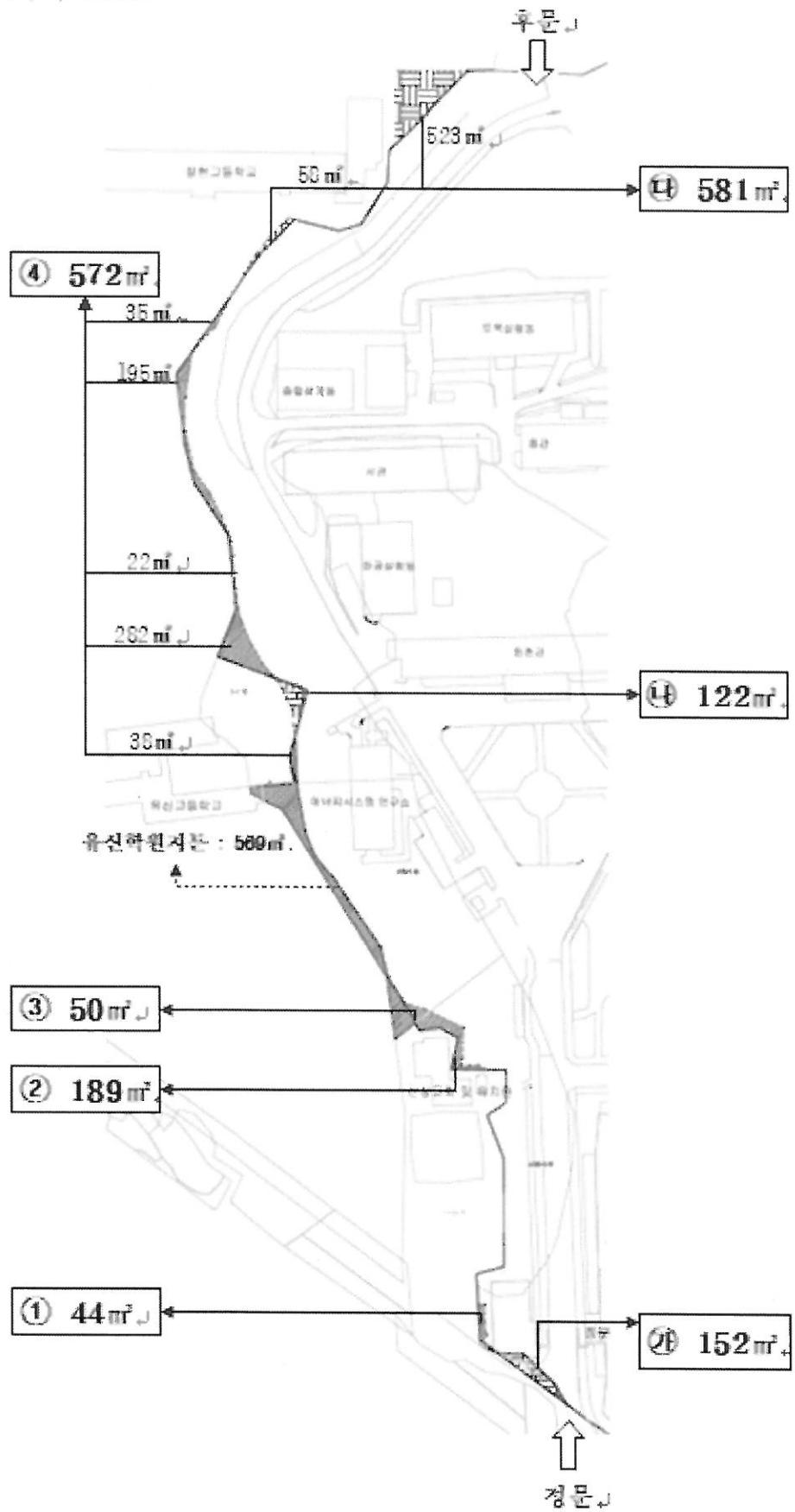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흥

이사 3/17/23

[불입] 대상부지 도면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흥

이사

31712

제 12 호 2023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23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김선용 : 먼저, 아주대 임야에 대한 과세대상 합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 560백만원 등 관리운영비 666백만원 증가, 요양병원 공사비 일부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조정 898백만원 감소, 병원 장비리스 지원비용 등 투자자산지출 20,140백만원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윤경식 : 법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대병원 장비리스비용 지원금 200억원을 부속병원투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교지 안에 있는 토지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에 따라 아주대 임야 2개 필지 과세 대상 추가에 따른 2023년분 160백만원을 포함하여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금액 추정액 695백만원이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비회계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추가 부담 추정액은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 장 : 이 외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성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23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23학년도 법인일반업무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과 목	2차 추경(A)	증감(A-B)	1차 추경(B)	과 목	2차 추경(A)	증감(A-B)	1차 추경(B)
전 입 금 수 입	14,849	-	14,849	보 수	1,193	-	1,193
기 부 금 수 입	9,200	-	9,200	관 리 운 영 비	3,455	666	2,789
예금이자수입	5,093	-	5,093	지 급 이 자	2,344	-898	3,242
수익재산수입	2,094	-	2,094	경 상 비 전 출 금	1,094	2	1,092
잡 수 입	3	2	1	법 정부 담전 출 금	10,797	-	10,797
운 영 수 입	31,239	2	31,237	예 비 비 등	1,201	-	1,201
				운 영 지 출	20,084	-230	20,314
장기차입금수입	10,000	-	10,000	투자와기타자산	21,271	20,140	1,131
임대보증금수입	190	-	190	고정자산매입지출	2,641	-	2,641
				유 동 부 채 상 환	3,072	-	3,072
				고 정 부 채 상 환	17,534	-	17,534
자산부채수입	10,190	-	10,190	자산부채지출	44,518	20,140	24,378
전기이월자금	96,684	-	96,684	차기이월자금	73,511	-19,908	93,419
합 계	138,113	2	138,111	합계	138,113	2	138,111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31기2

제 13 호 대우학원 임원 및 이사장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임원 및 이사장 선임(안) 발의.

이 사 장 : 2023년 9월 17일부로 본인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대우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음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 주재 하에 후임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대해 동의하다.)

이 사 장 : 이어서 이사장 후임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기 이사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임기만료일 이후인 2023년 9월 18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이사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우선 제가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선용 상임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선용 이사는 2012년부터 10년 넘게 대우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우학원 및 산하기관의 주요 심의 안건을 다루어 왔고 특히, 2021년 3월부터는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대우학원의 전체 업무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대우학원을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직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고,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대우학원의 미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사님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이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실 경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김선용 이사께서 이사장을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영 래 :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10인의 호선으로 김선용 이사를 2023년 9월 18일부터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인 2024년 2월 6일까지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상임이사 김선용 이사장 취임을 승낙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식

이 사 김 선 용

- 19 -

이 사

31기3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추호석	2019. 9.18 ~ 2023. 9.17					
이사	김성진	2023. 6. 4 ~ 2027. 6. 3	교육이사	이사	김성진	2023. 6. 4 ~ 2027. 6. 3	교육이사
이사	문길주	2020. 3.31 ~ 2024. 3.30	교육이사	이사	문길주	2020. 3.31 ~ 2024. 3.30	교육이사
이사	신희택	2022. 2.15 ~ 2026. 2.14	교육이사	이사	신희택	2022. 2.15 ~ 2026. 2.14	교육이사
이사	김성	2021. 2. 7 ~ 2025. 2. 6	교육이사	이사	김성	2021. 2. 7 ~ 2025. 2. 6	교육이사
이사	박상일	2020. 3.31 ~ 2024. 3.30	개방이사	이사	박상일	2020. 3.31 ~ 2024. 3.30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20. 3.31 ~ 2024. 3.30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20. 3.31 ~ 2024. 3.30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김영래	2020. 3.31 ~ 2024. 3.30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김영래	2020. 3.31 ~ 2024. 3.30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이영현	2021. 5.11 ~ 2025. 5.10		이사	이영현	2021. 5.11 ~ 2025. 5.10	
이사	최기주	2022. 3.16 ~ 2026. 3.15	교육이사	이사	최기주	2022. 3.16 ~ 2026. 3.15	교육이사
이사	김선용	2020. 2. 7 ~ 2024. 2. 6		이사장 ^{주1)}	김선용	2020. 2. 7 ~ 2024. 2. 6	
이사	최성민	2021. 5.11 ~ 2025. 5.10		이사	최성민	2021. 5.11 ~ 2025. 5.10	
감사	임종인	2023. 6.29 ~ 2026. 6.28	개방감사	감사	임종인	2023. 6.29 ~ 2026. 6.28	개방감사
감사	윤경식	2022. 6. 4 ~ 2025. 6. 3	공인회계사	감사	윤경식	2022. 6. 4 ~ 2025. 6. 3	공인회계사

주1) 임기 : 2023.9.18. ~ 2024.2.6.

8.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64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김선용 이사, 최기주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최기주를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선용

이 사

최기주

9.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64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23년 8월 10일

이사장 추호석

이사 문길주

이사 신희택

이사 김성

이사 박상일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 김영래

이사 최기주

이사 김선용

감사 윤경식